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49
----------	-------

발의연월일 : 2026. 8. 12.

발 의 자 : 한병도 · 윤준병 · 朴芝源
윤종균 · 김교홍 · 이춘석
박상혁 · 양부남 · 진선미
전용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한국문화원은 한국문화 확산과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해외에서 국제문화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전 세계 30개국에 35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한국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 상위 법률이 부재하여 시행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때문에 한국문화원의 소속은 외교부에, 운영은 문체부에서 담당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더욱이 앞으로 해외에서의 한국문화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한국문화원의 예산 확보 및 업무수행 등 기관 운영 및 지원에 있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법률에 한국문화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

으로써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한국문화원 운영과 관련한 모순을 해소하고, 한국문화원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재외한국문화원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와 한국문화 홍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국에 한국문화원(이하 “한국문화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한국문화원에는 원장 1인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문화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한국문화원의 설치기준·운영 및 원장·직원의 자격·임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한국문화원의 기능) 한국문화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한국문화의 해외 홍보
2. 외국과의 문화교류
3. 해외 문화홍보 정책 지원

4. 해외 문화정보의 수집 및 보고
5. 해외언론과의 협력 및 국가이미지 제고
6.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재외공관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외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한국문화원 등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외국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문화원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외국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해외문화홍보원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한국문화원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2조의2(재외한국문화원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와 한국문화 홍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국에 한국문화원(이하 “한국문화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u> <u>② 한국문화원에는 원장 1인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u> <u>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문화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한국문화원의 설치기준·운영 및 원장·직원의 자격·임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신 설></u>	<u>제12조의3(한국문화원의 기능) 한국문화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u> <u>1. 한국문화의 해외 홍보</u>

	<u>2. 외국과의 문화교류</u> <u>3. 해외 문화홍보 정책 지원</u> <u>4. 해외 문화정보의 수집 및 보</u> <u>고</u> <u>5. 해외언론과의 협력 및 국가</u> <u>이미지 제고</u> <u>6.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u> <u>법」에 따른 재외공관의 문화</u> <u>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u> <u>7. 그 밖에 해외 문화활동 지원</u> <u>에 관한 사항</u>
--	---